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8호
----------	------

발의년월일 : 2003. 3. 5

발의자 : 강연종의원외 2인

□ 제안이유

-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 국외여비의 지급 기준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안 별표 2)

□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지급기준)
- 같은법시행령 [별표8]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의 비교2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 “국외여비정액표”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급기준액	숙박비 (1야당)
의장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부의장	
의원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4조관련)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4조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숙 박 비 (1야당)	구 분	숙 박 비 (1야당)
의 장	가등급 <u>151</u>		----- <u>166</u>
부의장	나등급 <u>109</u>		----- <u>120</u>
	다등급 <u>84</u>		----- <u>92</u>
	라등급 <u>72</u>		----- <u>79</u>
의 원	가등급 <u>132</u>		----- <u>145</u>
	나등급 <u>86</u>		----- <u>95</u>
	다등급 <u>64</u>		----- <u>70</u>
	라등급 <u>56</u>		----- <u>62</u>